

제 안 설 명 서

【영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영 주 시

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2
----------	-----

제출년월일 : 2000. // . . .
제출자 : 영주시장

1. 개정이유

규제완화차원에서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폐지 또는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보조금 운영결과 사업자의 상당한 수익이 예상될 때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여 폐지함(안 제7조제2항)
- 나. 보조사업의 폐지시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것을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신고하도록 이중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함(안 제12조제1항)
- 다. 보조사업의 감독내용을 완화함(안 제15조)
- 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를 완화함(안 제17조)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참고자료 : 덧붙임

- 관련법령(발췌) 1부

영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중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를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으로 한다.

제15조중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을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로 한다.

제1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를 삭제한다.

2. 3년이상 경상적자가 10퍼센트 이상일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영주시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불일 수 있다.</p> <p>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불일 수 있다.</p>	<p>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시장은</p> <p>..... <u><삭 제></u></p>
<p>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u>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u></p> <p>② <생략></p>	<p>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p> <p>..... <u>보조사업을 인계, 중단</u> <u>② <현행과 같음></u></p>
<p>제15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척분을 할 수 있다.</p>	<p>제15조(감독)</p> <p>..... <u>.....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u></p>

신·구조문 대비표
【영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한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u>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성이 없을 때</u></p> <p>3. <생략></p> <p>4. <u>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 하지 않을 때</u></p> <p>5.~6. <생략></p>	<p>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p> <p>1. <현행과 같음></p> <p>2. <u>3년이상 경상적자가 10퍼센트 이상일 때</u></p> <p>3. <현행과 같음></p> <p>4. <삭제></p> <p>5.~6. <현행과 같음></p>

관 련 법령(발췌)

【지방재정법】

제14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기타 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공공기관의 범위등) ①법 제14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관을 말한다.

②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14조 세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등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의 안

- 의안번호 : 제152호
- 의 안 명 : 영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해당부서 : 기획감사담당관실

2. 제안이유

규제완화차원에서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폐지 또는 완화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가. 보조금 운영결과 사업자의 상당한 수익이 예상될 때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여 폐지함.(안 제7조 제2항)
- 나. 보조사업의 폐지시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것을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신고하도록 이중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함(안 제12조 제1항)
- 다. 보조사업의 감독내용을 완화함(안 제15조)
- 라.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한 제재를 완화함(안 제17조)

4. 검토의견

- 영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동조례 제7조 제2항 보조금운영결과 사업자의 상당한 수익이 예상될 때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여 폐지하고,
 - 동조례 제12조 제1항중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를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으로 하며,
 - 동조례 제15조중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을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로 하고,

- 동조례 제17조제2호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를 “3년 이상 경상적자가 10퍼센트 이상일 때”로 수정하고, 제4호를 삭제하는 내용임.
-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2000. 4. 3. 지방자치단체규제개혁지침이 시달되어 규제완화 차원에서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000. 11.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 영 순